

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대전광역시는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「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월 일

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
1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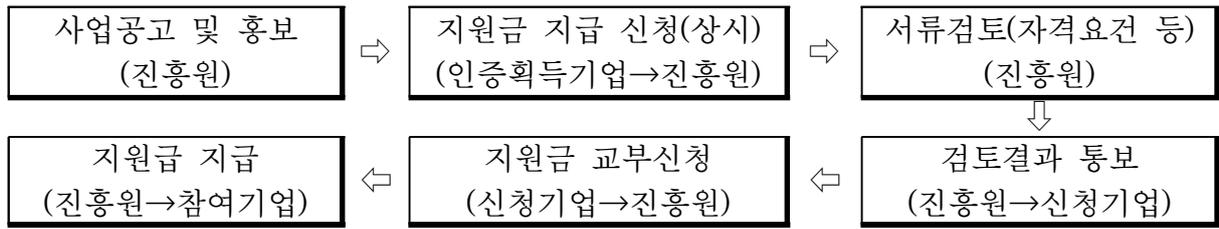
- 사업명 :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.
- 지원규모 : 19개사 내외
- 지원대상 :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(공장)을 둔 중소기업으로
‘25년 12월 ~ ’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
(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, 24년 및 25년 지원받은 기업 제외)

2. 지원내용

-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4,000천원 한도 지원 / 단, 소요비용의 80% 이내(부가세 제외)
-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지원(지원한도 내)
-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
- 인증 지원분야
 - [붙임2]을 참조하여, 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되어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
 - * 단, [붙임2]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 불가

인증건수	기업당 지원한도	지원한도
3건 ⁽¹⁾	14,000천원	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80%
(1) 인증 종류별 건수이며, 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		
(2) 지원항목		
- 인증비 및 컨설팅비 :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		
* 심사비 :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		
*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		
* 컨설팅비 :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인증 진행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		
- 시험비 :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		
(3) 2025년 12월 ~ 20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		

3. 사업 추진절차


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신청기간 : 2026. 3월부터 (상시)
- 선정방식 : 선착순 (* 서류미비 시, 서류보완 완료시점을 신청일시로 정함)
- 모집규모 : 19개사 내외

* 상기 일정·규모는 모집 현황 및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예산 조기소진 시 마감)

- 접수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 기업통상지원팀
- 신청방법 : 대전비즈홈페이지(www.djbea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【신청절차】

- ▶ 대전비즈(www.djbea.or.kr) → 로그인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→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

○ 신청 제외대상

- 최근 2개년(24년, 25년)에 동 지원사업 수혜기업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(단, 사업 신청 전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)
-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
(단, 제품분야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)

○ 제출서류

- 필수 제출서류

- ① 획득 인증서 사본
 - 또는 인증기관 증빙서류 등 인증획득을 알 수 있는 서류
- ② 사업자등록증
- ③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 (*증명서상 표시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)

- ④ 공장등록증(※해당시에만 제출)
- ⑤ 수출실적증명서('23년~ '25년)
- ⑥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
 - 수출지원관리시스템에서 발급 가능(www.djtrade.or.kr) 사업공고 메뉴 클릭 → 해당 공고 선택 → 공고 우측 상단 확인증 발급 클릭
- ⑦ 참가신청서 및 획득내역서(붙임1)
- ⑧ 참가서약서(붙임3)
- 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(붙임4)
- 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(붙임5)
- ⑪ 비용 증빙서류 일체
 - 비용청구서(인보이스), 송금내역서, 세금계산서(영수), 비용산출내역서, 신청기업과 컨설팅 및 인증기관 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 등

5.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

○ 선정방법 : 선착순 선정

- 동일 일자 신청건에 대해서는 ‘대전비즈’ 접수순서에 의거 순번 결정(※ 단, 서류보완이 필요한 신청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된 시점을 신청완료 시점으로 정함)
- 기업당 최대 지원인증건수 3건 이내에서 복수 신청 가능함, 다만 추가 신청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건으로 ‘신청순번’을 적용하지 않으며, 추가신청 시점으로 선착순 순번 재결정

○ 지원방법 :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- 인증 획득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(부가세 제외한 비용의 80%)를 한도 내에서 사후 지급
- ‘신청서류(신청서, 인증서, 인증획득 증빙서류 등) 검토 → 지원 여부 및 지원금 확정 통보 → 지원금 지급신청 → 지원금 지급’ 절차 순으로 지원

○ 지원제한 :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-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
-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

○ 컨설팅비 지원

-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였을 경우, 컨설팅비용도 지원

* 단,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 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(지출증빙자료 제출 시점 등록 여부 확인)

**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 (<https://www.smes.go.kr/globalcert/main.do>) → 컨설팅기관 →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

6. 유의사항

-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, 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
- 「공공재정환수법」 시행(2020.01.01.)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(이자율 포함)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(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)이 부과·징수될 수 있음
- 신청기업(기업정보, 대표자 등)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,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
- 획득절차가 진행중인 인증은 반드시 인증획득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, 인증획득 완료 시점이 '25년 12월 ~ ' 26년 11월 기간 내에 해당되어야 함

7. 문 의 처
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담당자 서란 0423803044
- 주 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2층 201호
- 메일주소 : bizhelper@djbea.or.kr